

“재가불교운동에 더 큰 관심을”

동산불교대 재가불교수련원 부지 쾌척한 광우건설 이종현 대표

때때로 한 사람의 결심이 불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동산불교대학이 사상 김재일도 동문 한 사람의 회사로 재가 불교수련원을 포함한 도량 ‘대아미타사’ 건립을 눈앞에 두게 됐다. 보살행의 주인공은 동산불교대학원 동문 이종현 광우건설 대표(53)다. 이 대표는 2월 28일 동산불교회관에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약 3만평 일야를 동산불교대학 아미타사 재가 불자수련원 부지로 쾌척했다.

“대아미타사를 건립하겠다는 이사장님의 원력이 대단하셨습니다. 불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건립되는데 보탬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이 대표가 기증한 부지에는 대아미타사

사찰 및 평생염불원·정도염불원·명상원 등이 들어서 재가불자들이 연중 언제든 수련할 수 있는 종합도량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로써 동산불교대학은 교육·사회운동·수행 도량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대표의 이런 결심은 사실 아내 전정혜(47)씨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뤄지기 힘들었다. 이 대표가 처음 회사의 뜻을 비쳤을 때 오히려 아내 전씨가 더 좋아했다고 한다. 부부가 함께 재가불교운동의 터를 닦는데 마음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가 회사를 결심하는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가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새로 건립

될 도량에서 재가불자들의 염불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대표는 현재 동산불교대학 연합교사단에서 활동하며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김포 601세대 호국비통사에서 전법을 펼치고 있다. 이제 이 대표에게는 불심으로 여루만져야 할 아들이 많다.

“군법당에 나가보니 어려운 내용보다 쉬운 염불수행을 권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대아미타사 건립도 재가불자들의 수행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재가 한 일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재가불교운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 활동 시동

제2차 회의 개최 위원장 선출·실무위 구성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 2월 15일 위원회 소속 위원 대부분이 불참해 파행운영했던 것과 달리, 위원장 선출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 행보를 위한 소임분담이 이뤄졌다.

대책위 위원장에 선출된 법타스님은(은혜사 주지)은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갈망하는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소임을 수행하겠다”고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대책위는 위원장 법타스님을 비롯해 원학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정호 스님(용주사 주지), 정안 스님(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최

순열 부총장(동국대 학사부총장)이 참여하는 대책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안 스님이 총괄간사를 맡았다.

또 대책위원회에 총무원 기획실장, 석립회, 동국대 법대 동문회, 동국대 총동창회 등 4명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대책위는 2월 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구성된 조직으로 조계종 중앙종회 2인, 조계종 총무원 1인, 교구본사 대표 5인, 중앙신도회 1인, 동국대학교에서 1인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소위원회에 대정부 활동 및 서명운동 등 상세방안 수립을 위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조성섭 기자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위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김희성 김주원 박광서 최윤진, 이하 종자연)이 청구인 4인의 의견을 공모하고 법률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했다.

종자연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정교분리 원칙 위배 및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침해 ▲종교적 상징물로 인해 타종교 국민의 투표소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선거권(제24조) 침해 ▲특정종교시설 내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를 훼손한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복

자유권(헌법 제10조) 침해 ▲종교적 이유로 정치적 생활영역을 차별받지 않아야 할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청구대리인으로는 광균열·김종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종자연 박광서 공동대표는 “입지여건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종교시설에 설치된 투표소의 3분의 2를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생각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강진 기자

‘대운하 반대운동’ 확산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 출범...93개 단체 참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월 12일부터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공동대표 박광서)’이 출범했다.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불교행동에는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실행단체, 지역 사찰 등 9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한생명 한 살림의 공동체를 가꿔왔으나, 지금 한반도의 근간인 백두대간을 토막 내고 생명의 근원인 강을 파괴하려는 반생명·반환경·반문화적인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명박 운하는 환경재앙, 문화유산 파괴, 식수대란, 홍수위험을 촉발하는 대재앙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를 대재앙으로 몰아넣을 구상을 거두고 대운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운하 건설은 사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수행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우리 사부대중은 불교의 사찰을 결코 운하백지화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불교행동은 앞으로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에 적극 지원·동참하고, 도보순례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5월 21일 오후 2시 ‘운하백지화 범불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일 10시에 1분간 생명의 근원인 강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101 운동’을 전개하고, 1사찰 1회 환경보호 개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교행동은 3월 7일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문경 봉암사(주지 환현)에서 ‘운하 백지화·생명평화 발원 기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는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법어를 하고 김지하 시인이 참여해 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내포 가야산 세계복합유산으로”

조계종·중앙신도회 정책포럼 개최

수택사 대웅전, 서산 마애삼존불 등 국보와 개심사, 보원사터, 사면 석굴 등 보물과 그 외 100여개의 폐사지가 위치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내포 가야산권을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하는 포럼이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광용 위원(불교정책기획단 정책위원, 환경분석학 박사)은 기초발제를 통해 “수많은 문화유물의 존재가 곧 가야산의 자연환경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포 가야산권을 세계복합유산 등재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치를 재평가 하는 것임과 동시에 불교문화가 바로 우

리문화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자연적, 문화·자연유산 특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유산 등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2008년 2월 현재 문화유산 660개, 자연유산 166개, 복합유산 25개가 지정됐다.

한국에는 1995년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2007년 국내 첫 번째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까지 모두 8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다.

조성섭 기자

東大 강의평가 공개 큰 반향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공개한 강의평가가 대학가는 물론 사회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07학년도 2학기 전과목에 대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2회 학생평가를 실시한 동국대는 학생들의 200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즈음하여 이를 공개했다.

소수성 돌봄제라까지 나온 강의평가 평점

과 EX(Excellent), G(Good), P(Poor) 3등급으로 나눠 공개됐다. 강의평가 공개에 대해 평소 수강신청을 위한 정보에 목말랐던 학생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에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신성한 강의를 인기영합으로 유도한다”는 반발과 “다소 형식적인 평가를 전사행정하듯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지적은 앞으로 학교 측이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조성섭 기자

친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KM(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장승락]

석 명 서 (釋 明 書)

지난 2004년도에 매매된 극락사를 지금 매매한 것처럼 “개인 교에 사찰 또 팔았다”라고 보도한 법보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면서 법보신문은 진실한 보도로서 불교 언론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극락사는 개인 사찰사찰이고 재산은 개인소유(소유권)이다.
가. 극락사는 순수한 개인재산이고, 동 재산의 공동소유자중 1인이 남팔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채무로 인하여 채권단이 구성되고 권리자들이 그 남팔당을 매매한 것이다.

나. 그러나 법보신문은 이미 4년 전에 매매된 것이며, 법적으로 자기가 없는 개인간의 매매행위를 마치 태고종이 사찰을 고의적으로 개인교에 매매한 것처럼 일방적이며 편파적으로 보도하였다.

다. 또한 당시 시가 약 3억원정도에 불과하던 극락사를 남팔당의 총 분양가로 추정하여 60억, 백억원대를 호가하던 것으로 보도하였고, 마치 종단 총무원이 이에 개입하여 극락사를 편법 계약하였다는 등의 추측성 기사로 태고종과 개인교측의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총무원은 극락사를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매매에 개인한 사실이 없음) 그 당시 극락사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왜곡한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보도로서 본인과 태고종을 모멸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라. 이에 극락사의 전 주지인 본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일방적이고 선동적이며 본인과 총무원을 음해하려는 의도적인 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번 사태로 극락사와 하등 관련이 없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총무원과 종도여러분께 깊은 사죄와 회의를 드립니다.

2. 극락사 분쟁의 사실관계
가.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는 봉원사의 원로인 고(故) 도암스님이 창건한 사찰로서 극락사가 문중(門中)사찰로 운영되어 영구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사찰재산을 당시 문도회의 대표적인 상좌(僧者)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당시 극락사에 전제로 입주한 이모 스님은 도암스님이 돌아가시자 스스로 극락사의 주지행세를 하였다. 나. 이모 스님은 극락사를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며(화재로 인한 계약서 소실로 증거이전을 못했다고 주장) 아무런 재원(財源)도 없이 (주)삼승산업 대표 김보씨를 만나 자신이 「극락사 소유권자」라고 속이고 사찰 및 남팔당등 중·개척하여 분양이익금을 나누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남팔당 건축과정에서 이모 스님은 남팔당 봉안증서를 남팔당과 분양업자 등을 속여 이중계약 등을 하고 분양대금을 독식하기 위하여 시공업제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사기행위로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라. 이모 스님으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수많은 민·형사상의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극락사 신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지 이모 스님이 남팔당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종단 총무원에 이모 스님의 주지해임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총무원 규정부는 이모 스님의 비위사실 및 사기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자 이모 스님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법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주지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종현·종법에 따라 극락사 주지직에서 이모 스님을 해임하고 극락사 신도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장권주인 고(故) 도암스님의 친손

자인 본인이 새로운 주지로 임명되었다. (종무직원법에 따르면 이모 스님에 대한 주지 해임처분은 승려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고 종무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총무원장의 직권으로 해임이 가능한 행정적인 조치인 것이다.)

3. 법보신문의 무책임한 보도
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극락사의 남팔당 공사는 재원(財源)이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전임 극락사 주지 이모 스님이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법보신문에서 보도한 수십억, 백억대의 매각대금은 남팔당 공사와 관련된 극락사의 부채이며, 공사대금과 법적소송비용, 그리고 이모 스님이 횡령한 금액일 뿐이지 그 외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극락사의 매각은 극락사 신도 운영위원회가 채권단과 극락사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상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것인지 총무원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은 남팔당 매수인이 개인교 최고 권자라는 것은 추후에 알았을 뿐이다.)

다. 그리고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극락사」를 양도하여 채권단과 소송문제를 해결하고 극락사를 이전 건립 한다는 취지의 승인서를 종단 총무원에 요청한 것은 극락사 주지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라. 더구나 2002년 9월 이모 스님은 분양대행업자 최모(개인교 권사)씨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극락사 사찰 및 남팔당을 최모 씨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각함에 일체의 이익 없이 무조건 동의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사실상 이

모 스님 본인이 극락사와 남팔당을 개인교 교회재단에 매각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보신문은 이모 스님측 관계자의 주장만을 인용하고 극락사의 전 주지였던 본인과 종단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모 스님측 주장만을 거의 여과 없이 보도하는 행위로 언론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마. 법보신문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마치 본인과 종단 총무원이 극락사 매각과 관련하여 총체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왜곡, 과장하는 추측성, 편파성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태고종과 종도,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4. 법보신문에 대한 촉구
가. 그간 법보신문은 불교계의 정론지로 수많은 불자들이 종교적 신앙심을 고양하였고 교회의 공군으로 불교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법보신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음해성 보도를 함으로써 종교적 상상과 화합을 이끌어야 할 언론에서 불교계와 개인교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확대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 법보신문은 본인과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총무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수많은 불자들의 신앙심을 추락시키는 보도에 대해서 지면을 통한 사과의 관련기사를 취재한 기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한 보도로써 교계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신망 받는 불교의 언론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불기2552(2008)년 2월 21일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 전 주지 고담